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-299호

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
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-401호(2005.12.28), 도시계획시설 결정 되고, 같은 고시 제2006-301호(2006.08.30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, 같은고시 제2006-355호(2006.10.18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되고, 같은 고시 제2007-278호(2007.07.18)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같은 고시 제2007-402호(2007.10.24) 및 같은 고시 제2009-442호(2009.12.02), 같은 고시 2011-180호(2011.5.18)로 변경 인가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황계리 2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 :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도시계획과☎888-2642) 및 기장군청(건설과☎709-472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13년 8월 28일
부산광역시청

가.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개요

구분	변경전	변경후	비고
사업시행지의 위치	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황계리 27번지 일원	변경 없음	
사업의 종류 및 명칭	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 명칭 :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공사	변경 없음	
면적 또는 규모	부지면적 : 11,507.00㎡ 건축면적 : 5,214.29㎡ 연면적 : 8,718.85㎡	부지면적 : 변경 없음 건축면적 : 변경 없음 연면적 : 8,672.20㎡	감46.65㎡
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	성명 : (재)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동철 주소 : 감서구 지사동1276번지	성명 : (재)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안병만 주소 : 감서구 지사동1276번지	대표자변경
사업시행기간	2006. 10. 18 ~ 2011. 5. 31	2006. 10. 18 ~ 2013. 12. 31	기간연장

나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과 외의 권리의 명세 : 변경 없음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-310호

부산정관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

부산광역시 기장군 달산리 일원의 부산정관일반산업단지내 대하여 『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』 제15조와 『같은법 시행령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(산업입지과) 및 기장군(교통경제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.

2013. 8. 28.
부산광역시청

1. 산업단지의 명칭·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가. 명칭 : 부산정관일반산업단지
나. 위치 :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일원
다. 면적 : 1,209,272.4㎡
2. 산업단지의 지정목적(변경없음)
- 부산의 신흥개발지로서 자족적 산업기반 확보
- 기존 공장의 수용 및 기술·자본 집약적 산업의 적극유치
- 지역의 고용증대와 소득수준의 향상을 도모
3.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)
- 지정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
- 변경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,
부산광역시 기장군수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과 방법(변경없음)
가. 개발기간 : 2010년 ~ 2011년
나. 개발방법 : 공영개발
5.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(변경없음)
6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(변경없음)
7.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(변경없음)
8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·주소(변경없음)
9. 기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: 부산정관일반산업단지)결정조서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나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1) 용도지역·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2)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3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4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5) 건축물의 용도·높이·건폐율·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① 단독주택용지

도면 번호	위치 (가구번호)	구분	계획내용
-	A1~A20	기정	• 지정용도 :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단독, 다중, 다가구주택(단,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4항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 40%범위내 근린생활시설 허용) • 불허용도 :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
		변경	• 지정용도 :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단독, 다중, 다가구주택, 점포주택(단,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4항 규정에 의한 건축 연면적 40%범위내 근린생활시설 허용) • 불허용도 :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
		건폐율	• 60%이하
		용적률	• 150%이하
	높이	기정	• 3층이하
		변경	• 4층이하(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할 경우 4층까지 허용하고, 지상1층 이하에만 설치가능)

* 변경사유 : 산업단지내 실효성있는 건축계획을 위한 변경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3-123호

도시계획시설사업(바람어린이공원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

1.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-52호('99.3.6)호로 도시계획시설(바람어린이공원) 결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2-213호('02.8.5)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3-119호('13.8.1)로 변경결정,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바람어린이공원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, 제91조,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(늘푸른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13. 8. 28.
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

1. 사업시행자 위치 : 부산광역시 반여1동 1620번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
나. 명 칭 : 바람어린이공원 조성사업
3. 사업규모
○ 결정면적 : 4,575.9㎡(조경시설, 유희시설, 도로 및 광장, 녹지등)
○ 사업내용 : 부지면적 250㎡(포장 125㎡, 데크계단설치 1개소, 식재 등)
4. 시행자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권입면적 (㎡)	소유자		비고
					주소	성명	
계	1필지		4,575.9	4,575.9			
해운대구 반여동	1620	공	4,575.9	4,575.9	해운대구 반여동 1620	부산광역시 해운대구	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3-751호

도시계획시설사업(폐기물처리시설) 공사완료 공고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3-49호(2003.05.22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같은 고시 제2004-52호(2004.06.24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, 같은 고시 제2006-11호(2006.02.08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, 같은 공고 제2006-313호(2006.04.26)로 공사완료 되고, 같은 고시 제2010-49호(2010.11.3)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, 같은 고시 제2010-50호(2010.11.3.), 제2011-1호(2011.1.12.), 제2011-73호(2011.12.21.), 제2013-60호(2013.06.26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바 있는 사하구 장림동 914-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사하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3년 8월 28일
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

1. 사업시행자의 위치 : 사하구 장림동 914-8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
3. 사업의 명칭 :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
4. 사업의 규모
○ 사업부지 : 9,798㎡
○ 건축면적 : 767.36㎡
○ 연 면 적 : 655.36㎡
5. 사업시행기간 : 2010. 11. ~ 2014. 06. 30
6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○ 성명 : (주)부영개발 대표이사 김종각
○ 주소 : 사하구 장림동 914-8번지

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3-75호

「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8월 28일
부산광역시청

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사유
○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하므로 일몰제에 적용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 개정하려는 것임.
2. 주요내용
○ 부칙 제4항(유효기간) :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한 5년 연장
▷ 제4항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→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3. 의견제출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

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청(기업지원과, 전화번호 051-888-2315, Fax 051-888-2319, e-mail kjt2000@korea.kr)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기타사항
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(www.busan.go.kr)의 자치법규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3-58호

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
부산광역시 수영구고시 제2010-98호(2010.09.08)로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0-118호(2010.12.08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3-25호(2013.03.20)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남천동 148-57번지상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 : 수영세무서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3년 8월 28일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

1. 사업시행자의 위치(변경없음) :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-57번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
나. 사업의 명칭 : 도시계획시설사업 (수영세무서 청사 신축공사)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없음)
가. 사업대지 면적 : A=3,759㎡
나. 사업시설 면적 : 건축면적 984.81㎡, 연면적 7,932.05㎡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가. 성명 : 수영세무서장
나. 주소 :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-57번지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있음)
가. 당 초 : 2011.06.21 ~ 2013.08.31
나. 변 경 : 2011.06.21 ~ 2014.02.28
※ 변경사유 : 민원발생으로 인한 배기덕트 추가 시공 및 준공 관련 부서(유관기관) 협의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(변경없음)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남천동	148-57	대	3,759	국(국세청)				해당없음

7. 자금조달계획(변경없음) : 전액 국비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3-59호

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0-5호(2010. 1. 13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0-57호(2010. 6. 3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,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1-80호(2011. 8. 31.),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3-35호(2013. 5. 15.)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3-57호(2013. 5. 29.)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97-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2-553호선)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건설과(☎051-610-4711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3. 8. 28.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

1. 사업의 시행자 :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97-22번지 일원 [변경없음]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[변경없음]
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2-553호선)사업
나. 사업의 명칭 : 코스트코휴세일 배후도로 개설공사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도로개설 L=317m, B=16m (A=7,407.9㎡) [변경없음]
4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[변경없음]
가. 성 명 : 고려제강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이문
나. 주 소 :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75번지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2010. 7. 30. ~ 2013. 9. 30. [변경없음]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[변경없음, 게재생략]
* 변경사유 : 도로시설물 설계변경 등. 끝